

1. 인감증명(300원 → 500원)
2. 인감개인신고(200원 → 400원)
- 지방세에 관한 증명(4종)
  1. 세목별 납세증명(300원 → 500원)
  2. 납세완납증명 및 미(비)과세증명(300원 → 500원)
  3. 세목별 과세증명(300원 → 500원)
  4. 징수유예증명(300원 → 500원)
- 일반민원 관련사항(3종)
  1.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(1,000원 → 2,000원)
  2.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신청서(500원 → 1,000원)
  3. 음반판매업자 등록 재교부신청(500원 → 1,000원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朴 鍾 根)

- 본 조례는 제증명 발급과 인·허가 신청시 서류에 첨부하게 될 수입증지 수수료로써 구청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상하여야 하며
- 인감, 지방세 증명과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등 그 사용에 비중 있는 유형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5. 討論 要旨 : 생 략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조례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별표 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## 제 증명 등 수수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(증 명)			
1. 인감에 관한 증명			일제신고등 은 제외함
(1) 인감증명	1 통	500원	
(2) 인감의 개인신고	1 건	400원	
2. - 7. (현행과 같음)			
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
(1) 세목별 납세증명	1 통	500원	
(2)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(비)과세증명	'	500원	
(3) 세목별 과세증명	'	500원	
(4) 징수유예증명	'	500원	
9. - 12. (현행과 같음)			
(인가·허가·신고·신청·등록·지정·확인등)			
1. - 7. (현행과 같음)			
8. 문화공보 관계			
(1) - (18) (현행과 같음)			
(19) 음반판매업자등록신청	1 건	2000원	
(20)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 신청	'	1000원	
(21) 음반판매업자등록중재교부신청	'	1000원	

신·구조분 대비표						
현			정			
구	분	기준	요	액	구	분
		기준	요	액		
(증명)					(증명)	
1. 인감에 관한 증명					1. 인감에 관한 증명	
	(1) 인감증명	1 통	300	원	1 통	500 원
	(2) 인감 개인신고	1 건	200	원	1 건	400 원
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		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
	(1) 세목별 납세증명	1 통	300	원	1 통	500 원
	(2)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(비)과세증명	1 통	300	원	1 통	500 원
	(3) 세목별 과세증명	1 통	300	원	1 통	500 원
	(4) 징수유예 증명	1 통	300	원	1 통	500 원
(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)					(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)	
8. 문화공보 관계					8. 문화공보 관계	
	(19)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	1 건	1,000	원	1 건	2,000 원
	(20)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 신청	1 건	500	원	1 건	1,000 원
	(21)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	1 건	500	원	1 건	1,000 원